

다산의 「해방고(海防考)」에 나타난 중국 표선(漂船) 처리문제

정민

〈목 차〉

1. 머리말
2. 『사대고례(事大考例)』 「해방고(海防考)」의 구성
3. 중국 표선 처리 절차와 방식
 - 1) 표선 처리 규정과 「표선문정(漂船問情)」 5조
 - 2) 「해방고」에 나타난 표선처리 절차의 변화
4. 실제 사건을 통해본 표선 처리
5. 맺음말

국문초록

다산 정약용의 『사대고례(事大考例)』 중 「해방고(海防考)」는 18, 19세기 조선 서남 해안에 표착한 중국 표류선의 처리 절차와 처리 방식의 변화 과정을 사례별로 정리한 저술이다. 당시 서남해의 도서 지역에 빈번하게 출몰한 중국 표류선의 표류민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들 표류민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지

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

* 이 논문은 2009년 HYU 연구특성화사업으로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HYU-2009-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 연구사업단)

만, 대개는 일정한 매뉴얼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예전에는 표류민을 북경까지 압송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해금(海禁) 정책이 풀리면서 배가 온전할 경우 수로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표류선의 물품이나 철물(鐵物) 등은 가격으로 쳐서 은으로 배상해 주었다. 표류민의 인도도 뒤로 오면 서 봉성(鳳城)까지만 압부(押付)하는 것으로 바뀌는 등 조금씩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워낙 표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밖에 일본을 제외한 유구(琉球)나 기타 외국인의 경우도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육로를 통해 북경으로 압송되는 절차를 밟았다.

이렇듯 당시 조선과 중국 간에는 표류민 처리에 관한 일정한 규례와 절차가 작동되고 있었다. 표류는 뜻밖의 사고이지만, 생각지 않게 문화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다. 표류와 관련된 기록 속에는 타문화와의 접촉이 준 여러 흔적들이 남아 있다. 표류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와 있다. 향후 개별 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더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정약용, 사대고례, 해방고, 표류민, 표선, 표선문정, 통문관지, 동문회고

1. 머리말

서남해의 도서 지역에 빈번하게 출몰한 중국 표류선은 조선 정부에게 매우 골치 아픈 존재였다. 무엇보다 구호 및 송환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횡수도 잦았다. 특히 섬 주민들에게 표류선은 자칫 섬 경제를 결단낼 수도 있어,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들 표류선은 어떤 절차를 거쳐 다시 본국으로 보내졌을까? 여기에도 일정한 매뉴얼이 있었을까? 최근 공개된 다산 정약용의 『사대고례(事大考例)』 중 「해방고(海防考)」는 이 문제를 비교적 꼼꼼히 정리하고 있어, 이 글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종래 표류 관련 논의는 개별 표류기의 문학적 연구와 조일간(朝日間) 표류민 관련 논의로 대별된다. 중국 표류선 처리 문제는 최근에야 논의가 시작되었다.¹⁾ 본고는 중국 표류선에 대해 논한 필자의 앞선 논의와 연계하여 다산의 「해방고」를 분석하고, 당시 조중간(朝中間)의 표선 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몇 사건을 밀착해서 검토하겠다. 이를 통해 당시 표류선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갖는 의미를 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2. 『사대고례(事大考例)』 「해방고(海防考)」의 구성

다산 정약용이 1821년에 펴낸 『사대고례』는 26권 10책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이다. 제자 이청과 공동작업으로 마무리 된 이 책은 조선의 대청 외교 지침서의 역할을 염두에 두었다.²⁾ 현재 일본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中之島) 도서관에 소장된 이 책의 서두에는 사역원정(司譯院正)을 지낸 이시승(李時升)이 쓴 「사대고례찬집인기(事大考例纂輯因起)」가 실려 있다. 정작 『다산시문집』권 15에 실린 「사대고례제서(事大考例題序)」에서 다산은 “이 일의 편찬은 이청이 주관하였으나, 그 차례와 산삭하고 보완한 것은 모두 나에게 물어 결정한 것이며, 범례와 제서(題序), 비표(比表)와 안설은 모두 내가 만든 것이다.”³⁾라고 하여, 이 일이 자신과 이청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조의 어명에 의해 시작된 일이고, 대청외교와 관련된 공적 영역의 작업이었으므로, 해당부서의 일을 맡았던 이시승을 표면에 내

1) 김경옥, 「18-19세기 서남해 도서지역 표도민(漂到民)들의 추이」, 『조선시대사학보』 제44집(조선시대사학회, 2008. 3), 5-36면과, 정민, 「표류선, 청하지 않은 손님-외국 선박의 조선 표류 관련기록 탐도」, 한국한문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 임형택, 「사대고례와 정약용의 대청관계 인식」, 『다산학』 제12호(다산학술문화재단, 2008.6), 25-47면에 이 저술에 대한 개략적 소개가 실려 있다.

3) 정약용, 「事大考例題序」: “斯役也, 李淸實主編摩. 其弟次刪補, 咸決於余. 凡例題敘及比表案說, 余所爲也. 茲錄其草本, 俾不沒實於他日也.”

세웠던 것이다.

당초 정조가 이 작업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1799년(정조 23) 봄의 일이었다. 중국사신이 늦게 오면서 지패(紙牌)와 목패(木牌)에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왕이 전례를 물어도 아무도 아는 이가 없자, 정조는 조청 간의 외교문서를 모은 『동문회고(同文彙考)』가 검색이 힘들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동문회고』와 『통문관지』를 간추려 따로 한 질의 책을 만들 것을 명하였다. 하지만 이 일은 이듬 해 정조의 갑작스런 승하로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있다가, 22년 뒤인 1821년에야 다산에 의해 마무리되었다.⁴⁾

다산은 각 사례별로 갈래를 나눠, 예의 탁월한 편집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해 모두 26권의 규모로 이 『사대고례』를 완성하였다. 어떤 일이 발생하여 이전의 전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년 순으로 정리한 『통문관지』나 사건별로 관련 서류를 모아둔 『동문회고』를 일일이 검색할 필요 없이, 이 책에서 주제를 찾아보면 바로 전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대별로 변경된 사항까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던 것이다.

이 가운데 본고의 논의 대상인 「해방고」는 권 14에 실려 있다. 말 그대로 해로의 방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모은 것이다.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해금(海禁)이나 표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모두 여섯 갈래로 나눠, 사례별로 살폈다. 「해방고」의 세부 목차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비고
해금엄숙례 (海禁嚴束例)	중국 선박이 통상을 위해 해금을 어기고 바다를 건너온 것을 단속한 예 9건을 소개함.	끝에 『대청률(大清律)』 등 관련 법률 제시.
해도방수례 (海島防守例)	중국 선박이 조선의 공도(空島)와 신도(薪島) 등에 통상 목적으로 잠입했다가 적발된 예 3건을 소개함.	「교무고(交貿考)」에도 관련 내용이 있음.

4) 정약용, 앞의 글과 이시승의 「사대고례인기(事大考例因起)」를 참조할 것.

아인표해례 (我人漂海例)	조선인이 중국에 표류했다가 양국간 절차에 따라 송환된 예 9건을 소개함.	끝에 『예부칙례(禮部則例)』에 수록된 표류 조선인에 대한 처리 지침이 수록됨.
피인표해례 (彼人漂海例)	중국인이 조선에 표류했을 경우 그들의 선박이나 물품 처리에 관한 예 9건을 소개함.	각 건별로 비슷한 예시를 병렬 나열하여 규제 변화 과정을 설명함.
피표압부례 (彼漂押付例)	중국 표류민을 압송하여 본국으로 회송하는 기준과 처리에 관한 예 10건을 소개함.	각 건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병렬하고 안설을 통해 규례의 변화 과정을 설명함.
제국인표해례 (諸國人漂海例)	조선으로 표류한 기타 외국인을 중국을 통해 송환한 예 2건을 소개함.	유구국인 1건과 남번흑인(南番黑人) 1건

위 표에서 외국 선박의 조선 표류와 관련이 있는 것은 「피인표해례」와 「피표압부례」, 그리고 「제국인표해례」이다. 앞의 두 가지는 중국 선박 표류시 선박과 물품의 인도 및 표류민 본국 송환의 규례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왔는지를 대표적인 경우를 통해 설명하고, 관련 근거를 제시했다. 「제국인표해례」는 중국 외 다른 나라 표류민으로서 중국을 통해 본국으로 송환한 경우를 따져 본 내용이다. 요컨대 「해방고」는 표류민 처리에 관한 조선 정부의 대응 조치를 매뉴얼화 하여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다산은 「해방고서(海防考敍)」에서 중국과의 오랜 해상 교류의 역사를 길게 서술한 후, 「해방고」의 편집 의도를 이렇게 밝혔다.

무릇 바다를 사이에 둔 지역은 장사꾼이나 행인이 표류하여 떠돌아 달는 것을 또한 면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표류해 간 사람은 고려초에 둔라도(屯羅島) 배음위(陪戎尉)가 곤산현(崑山縣)에 표류하였고, 명 말에 경차관(敬差官) 최보(崔溥)가 영파부(寧波府)에 표류한 것이 있다. 중국 사람이 표류해 온 경우로는 원나라 사람 평장사(平章事) 화니적(火尼赤)이 철도(鐵島)로 표류했고, 정신보(鄭臣保)가 서산(瑞山)에 표류했으며, 왕가신(王可臣)이 은율(殷栗)에 표류한 예가 있다. 조정 벼슬아치로 표류해 온 사람만 해도 이렇게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으니, 하물며 장사꾼의 부류이겠는가? 대개 우리의 풍천(豊川)과 장연(長淵) 등지는 중국의 산둥과 마주해 있고, 강진과 해남 등지는 회남(淮南)과 마주해

있다. 위도가 같은 데다 지역도 서로 가깝다. 어그러지면 침벌함이 서로에게 미치고, 화목하면 표류해도 서로 구해준다. 이 모든 것이 해방(海防)의 사정과 관계된다. 이제 차례대로 모아서 해방고라 하였다.⁵⁾

다산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과 조선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해상 조난에 의한 표류 사고가 수시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 「해방고」를 작성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3. 중국 표선 처리절차와 방식

중국 표선이 조선 서남 해안에 표박해올 경우 조선 정부는 이를 어떤 처리 절차에 따라 구호하고 본국으로 송환했을까? 이 부분은 그간 꼼꼼하게 검토된 바 없다. 일반 규정상의 표선 처리 절차와 방식을 먼저 살핀 후, 다산의 「해방고」를 축조 분석하여 그 규례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1) 표선 처리 규정과 「표선문정(漂船問情)」 5조

표류민을 압송하는 방법에 대해 다산은 “무릇 표인을 압송하는 방법은 모두 규례로 된 것이 있어 『통문관지(通文館志)』에 실려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인용했다.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경계로 표류하여 오면 지방관은 우선 관(館)으로 맞이하고 해당 감영에 보고한다. 해당 감영에서 보고를 통해 사정

5) 정약용, 「해방고서」, 『다산시문집』(문집총간 281-321면) : “凡隔海之地, 其商旅行人漂流轉泊, 亦所不免. 我人之漂去者, 若屯羅島陪戎尉漂至崑山縣(高麗初), 敬差官崔溥漂至寧波府(皇明末)是也. 彼人之漂來者, 若平章事火尼赤來泊鐵島, 元人也鄭臣保漂至瑞山, 王可臣漂至殷栗(仁祖朝)是也. 朝紳漂轉者尙多可數, 況商賈之類乎? 彼我胥漂, 歲至數十, 咨報往來, 亦多可考. 蓋我豐川長湍等地, 與山東相直, 康津海南等地, 與淮南相直. 緯度既同, 壤地相近, 乖迕則侵伐互及, 和睦則漂轉胥恤. 總係海防事情, 今彙次爲海防考.”

을 들으면 역학(譯學)을 보내 문정케 한다. 배가 온전하여 수로로 가기를 원하는 자는 바람을 기다려 돌아가게 한다. 만약 배가 부서져서 육로로 가야하는 자는 비변사에 초기(草記)하여 서울에서 문정관을 파송하여 다시 문정하고, 비변사에서 갖추어 수본(手本)에 따라 인하여 차원(差員)과 함께 안동(眼同)하여 데려 온다. 양서(兩西) 즉 해서와 호서에 표류하여 온 사람은 그 땅에서 출발하여 곧장 의주에서 풀어준다. 삼남의 경우는 서울까지 데려 와서 한학(漢學) 4,5인을 차정(差定)하여 비국(備局)의 낭청(郎廳)과 함께 문정한다. 비변사에서는 보고를 위해 며칠간 머물러 두고 접대한다. 차자관(差咨官)은 안팎의 지역으로 나눠, 압송하여 원적지로 돌려보낸다. 산해관 안쪽 사람은 자문을 북경에 전달하고, 바깥 사람은 봉성(鳳城)에 자문을 전달하고 돌아온다. 만약 사신 행차와 만나면 그 편에 맡긴다.⁶⁾

표류 사실 확인 후 지방관은 해당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은 즉각 역관을 보내 문정한다. 배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바로 돌아가게 하고, 부서져서 부득이 육로로 돌아가야 할 경우는 해당 감영에서 비변사로 공문을 보내면, 비변사가 문정관을 파송하여 다시 문정하고, 서울로 데려온다. 이들이 황해도와 충청도로 표류했을 때는 서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의주에서 풀어주고, 삼남으로 표류했을 때는 서울로 데려와 문정한 후 원적지로 돌려보낸다. 이 경우도 산해관을 기준으로 내지인일 경우는 자문을 북경으로 보내고, 외지인은 봉성까지만 자문을 전달하였다.

또 『만기요람(萬機要覽)』 중 「비변사(備邊司)」조의 「소장사목(所掌事目)」 가운데 「표도민(漂到民)」 항목에도 표류민 송환 절차가 설명되어 있다.

6) 정약용, 『사대고례』(『다산학단문헌집성』 9책, 63면) : “凡漂人押送之法, 具有成例, 載於館志. 館志云 : 上國人漂泊我國界, 地方官爲先館接, 馳報于該營. 該營狀聞形止, 發遣譯學問情. 船完而願從水路者, 候風發回. 若船破從陸者, 備局草記, 自京差送問情官. 更爲問情, 具由手本于備局. 仍與差員眼同領來, 而兩西漂到者, 由其地直解義州. 三南則領到于京城. 差定漢學四五員, 偕備局郎廳問情. 備局修啓, 留接數日. 差咨官分內外, 押解轉送原籍地方. 山海關以內人則傳咨北京. 以外人則傳咨鳳城而還. 如值使行則順付.”

이국인이 표착했다는 장계가 들어오면, 수로든 육로든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환송하는 뜻으로 다시 아뢰어 맡기되, 의복과 바다를 건널 때 필요한 양식 및 잡인을 금한 채 호송하는 등의 절차를 엄히 시달린다. 표류민이 만약 경기(京畿)를 통해 간다면, 홍제원(弘濟院)에 들어온 뒤에 낭청을 보내서 다시 문정하게 한다. 의복과 잡물은 별도로 내어준다. 호남은 표류민이 수로로 가기를 원할 경우 회답이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떠나보낸 뒤, 전후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정조 계해년에 정식으로 삼았다. ○ 표착한 중국인으로 육로로 돌아가는 자는 내지인이면 따로 자관(咨官)을 정해 데려가고, 만약 외지인이면 의주부(滸府)의 역학(譯學)이 봉성으로 넘겨준다. 자문은 금군(禁軍)을 정하여 의주부로 내려 보낸다.⁷⁾

그 내용이 앞서 본 『통문관지』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본문 중 정조 계해년을 말했는데, 정조 연간에 계해년이 없으므로 간지에 착오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쳐야만 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피기로 하겠다.

외국배가 표착했을 때 역관이 파견되어 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요구되었다. 실제로는 문정 과정에서 수많은 폐단이 발생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다산은 『목민심서』권 3, 「왕역봉공(往役奉公)」 제 6조에서 ‘표선문정(漂船問情)’에 관한 5조목을 따로 남겨, 이러한 폐단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 다소 길지만 자료 소개를 겸하여 전문을 보인다.

표선을 문정하는 일은 기미가 급하고 행하기가 어렵다. 지체하지 말고 시각을 다투어 달려가야 한다. 표선을 문정 할 때 스스로 힘써야

7) 『萬機要覽』軍政篇 권1: “異國人漂到狀啓入來, 水陸間從自願還送之意, 覆啓知委. 而衣袴及越海糧, 禁雜人護送等節申飭. 漂人若路由京畿, 則入弘濟院後, 發遣郎廳, 更爲問情. 衣袴雜物, 別以題給. 湖南則漂人願從水路, 不待回下, 直爲發送後, 形止狀聞事. 正宗癸未定式. ○漂漢人從陸還歸者, 內地人則別定咨官領送, 若外地人, 滸府譯學, 領付鳳城, 咨文定禁軍, 下送滸府.”

할 비는 무릇 다섯 조목이 있다.

첫째, 이국 사람은 예로써 마땅히 서로 공경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매번 저들이 머리를 깎고 소매를 좁게 한 것을 보기만 하면 마음으로 업신여겨서, 접대하고 문답할 때 행동에 체모를 잃고 만다. 장차 경박하다는 이름이 천하에 퍼지게 만드니 이것이 첫 번째 경계이다. 삼가는 마음과 충직과 신의로써 마치 큰 손님 대접하듯 해야 한다.

둘째, 무릇 표류선 가운데 문자가 있을 경우, 인본(印本)이나 사본(寫本) 할 것 없이 모두 베껴서 보고하게 되어 있다. 예전에 표류선 한 척이 서적을 가득 싣고 온 일이 있었다. 몇 천 몇 만권을 싣고서 무장(茂長)의 외양(外洋)에 정박하였다. 문정하러 온 여러 관리가 상의하여 말했다. “베껴서 보고하러 들면 정위조(精衛鳥)가 조약들을 물어 바다를 메우려는 격일 테고, 만약 대충 가려 뽑아 보낸다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백사장을 파헤쳐서 몇 만권이나 되는 책을 모래밭에 물어버렸다. 표류해온 사람이 크게 통탄하였으나, 또한 다시 어찌 못했다. 내 친구 이유수(李儒修)가 뒤에 무장의 원님이 되었는데, 백사장 가운데서 나온 책 몇 짝을 얻었다. 『삼례의소(三禮義疏)』와 『십대가문초(十大家文鈔)』 같은 것들은 물에 잠겼던 흔적이 그대로 있었다. 내가 강진에 와서 『연감유함(淵鑑類函)』 한 권을 얻었는데, 몹시 심하게 찌어 있었다. 내가 물었다. “이것은 무장으로부터 온 겐가?” 그 사람이 크게 놀랐다. 대개 천하의 일에 태산을 끼고 복해를 뛰어 넘는 것처럼 힘으로 능히 하지 못하는 일에는 본시 죄나 벌이 없는 법이다.

신은 말한다. 할 수 없는 것을 조정에서 죄 준다면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그럴진대 마땅히 서적을 펼쳐놓고 단지 서명(書名)만 기록하여 그 권수를 상세히 보여주고, 서적이 너무 많아서 갑작스레 베껴 쓸 가망이 없는지라도 다만 서명만 적었다고 한다면 또한 괜찮지 않았겠는가? 이에 견책을 당하더라도 다만 웃음을 머금고 심리하여야지, 몽둥이로 때리고 땅에다 묻는 버릇을 행하여 진귀한 보배를 거칠게 없애버리고 말았으니, 저들이 장차 우리를 보고 무어라고 하겠는가? 매번 한 가지 일을 만나게 되면 다만 이치에 따르는 것으로 마음을 먹어야지 직분을 잃게 될까 겁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셋째, 문정은 반드시 바다 섬에서 이루어진다. 섬 주민들은 본시 모두 고자질하는 법이 없는지라, 이에(吏隸)로 따라간 자들이 접대를 빙자하여 함부로 위협하고 겁탈하여 술이나 두레박, 그릇마저도 남아나는 것이 없게 된다. 한 차례 표선이 지나가기만 하면 여러 섬이 반드시 망하고 만다. 그래서 표선이 와서 정박하면, 섬 주민들이 반드시 칼을 뽑고 화살을 겨냥 죽이거나 해치려는 기색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달아나게 만든다. 또 혹 바람이 급하거나 암초가 고약해서 화가 코앞에 미쳤으므로 구해주기를 애걸해도 섬 주민들이 엿보며 나오지 않아 침몰하도록 내버려 둔다. 침몰하여 죽고 나면 사방 이웃들이 몰래 의논해서 배와 화물을 불질러 버려 그 자취를 없애버린다. 십여 년 전에 나주의 여러 섬에서 이같은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양 가족을 태워버린 것이 수만 장이고, 감초를 불사른 것이 수만 근이었다. 그 가운데 혹 불 속에서 빼내온 것을 내가 직접 보기까지 했다. 사정이 이와 같은 것은 어찌서인가? 본래 어리석은 관리가 아전부치들을 죄주지 않아서 그들로 하여금 멋대로 못된 짓을 하게 한 까닭에 백성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같이 하는 것이다.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만약 이같은 일을 듣게 된다면 우리를 두고 사람을 포 뜨고 사람을 잡아먹는 나라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까닭에 문정관은 마땅히 눈을 똑바로 뜨고 엄하게 살피서 백성을 침탈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마땅히 별도로 큰 집 하나를 빌려서 술 나부랭이를 늘어놓고서 함께 온 이에(吏隸)로 하여금 모두 한 집에 거처케 하며, 그들이 먹는 쌀과 소금은 관에서 돈으로 사들여, 날마다 나눠 지급한다. 섬을 나오는 날에는 따로 그 구역에서 한 톨의 쌀과 한 줌의 소금도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하루의 나무람만으로 폐단을 적게 할 수가 있다. 마침내 해당 지역의 섬주민이나 육지 주민에게 마땅히 조금씩 거두어들이면 된다.

넷째, 좋은 점을 보면 따라서 옮겨가는 것은 작은 일도 모두 그러하다. 지금 해외의 여러 나라는 배의 제도가 기묘하여 물길을 가기에 편리하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도, 선박의 제도가

소박하고 비루하다. 매번 표류선 한 척을 만날 때마다 그 배의 제도를 그림으로 설명하여 각각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목재는 무슨 나무를 썼는지, 뱃전은 몇 판이나 덧댔는지, 길이와 너비 및 높낮이의 정도와 추녀를 숙이고 올린 형세, 돛과 돛대와 뜸의 범식, 각종 노와 키의 형상, 유희(油灰)로 틈새를 막는 방법, 익판(翼板)으로 파도를 밀어내는 기술 등등 각종의 묘리를 마땅히 상세히 물어 자세하게 기록하여 본받기를 꾀해야 한다. 돌아보건대, 표류했던 사람들이 물에 내리면 마침내 큰 도끼를 가지고서 이를 찍어내고 꺾어버려 즉시 불태워 버리기까지 하니, 이것이 또 무슨 경우란 말인가. 뜻 있는 인사가 이 일을 맡게 된다면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저들과 더불어 얘기할 때는 마땅히 불쌍히 여기는 기색을 보여야 한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줄 때도 신선하고 깨끗하게 하기를 힘써서 정성과 후의를 다하는 것이 얼굴빛에 드러나게 하여, 저들이 기뻐하여 돌아가 좋은 말을 하도록 해야 한다.⁸⁾

- 8) 정약용, 『목민심서』 권 3, 「왕역봉공(往役奉公)」 제6조. : “機急而行艱, 勿庸遲滯, 爭時刻以赴. 漂船問情, 其所自勉, 凡有五條. ○一. 異國之人, 禮當相敬. 吾人每見彼人剃髮夾袖, 心懷慢侮, 接待問答, 動失體貌, 將使佻薄之名, 達于天下. 此一戒也. 恪恭忠信, 如見大賓可也. ○一. 國法, 凡漂船中所有文字, 毋論印本寫本, 盡行鈔報. 往年有一漂船, 滿載書籍, 幾千萬卷. 泊於茂長外洋, 問情, 諸官議曰: ‘將欲鈔報, 如精衛填海. 如有刪拔, 必城火及池.’ 遂掘沙場, 以累萬卷書, 埋之沙中. 漂人大痛, 亦復奈何. 李友儒修, 後爲茂長宰, 得沙中出書數帙, 若三禮義疏, 十大家文鈔, 猶有浸漬之痕. 余到康津, 得淵鑑類函一卷, 朽敗已甚. 問曰: ‘此從茂長來耶? 其人大驚. 大凡天下之事, 力所不能, 本無罪罰, 挾山超海. 臣曰: 弗能而朝廷罪之, 有是理乎? 則宜臚陳書籍, 但錄書名, 詳其卷數, 辭曰: 充棟汗牛, 猝無鈔寫之望, 故但錄書名, 不亦可乎? 此而遭譴, 唯宜含笑就理, 乃行椎埋之習, 暴殄球璧之寶, 彼將謂我何哉. 每遇一事, 唯以循理爲心, 勿以失職發怯, 則無此事矣. ○一. 問情必在海島, 島民本皆無告, 吏隸從行者, 憑藉接待, 恣行剽劫. 錡釜餅器, 悉無殘餘. 一經漂船, 數島必亡, 故漂船到泊, 島民必拔劍關弓, 示以殺害之色, 使之遁去. 又或風急石惡, 禍迫呼吸者, 哀號乞救, 而島民窺而不出, 任其覆沒, 既死既死, 四隣密議, 焚船燒貨, 以滅其跡. 十餘年前, 羅州諸島, 屢有此事, 羔皮焚者數萬領, 甘草焚者數萬觔. 其或逸出於火中者, 余親見之矣. 若是者何也. 本由昏官不戢吏隸, 使之縱惡, 故民亦垂泣而爲是也. 海外諸國, 若聞此事, 不以我爲脯人噉人之國乎. 故問情官, 宜明目嚴察, 禁其侵虐, 謂宜別借一大室, 列置錡釜, 使一行吏隸, 咸處一室, 其所食米鹽, 官以錢買入, 排日支放, 出來之日, 別自區處, 一粒之米, 一撮之鹽, 毋貽民害, 則庶乎一日之責, 得以小塞也. 畢竟區處陸民島民, 宜略略攤徵. ○一. 見善而遷, 小事皆然. 今海外諸國, 其船制奇妙, 利於行水. 我邦三面環海, 而船制朴陋. 每遇一漂船, 其船制圖說, 各宜詳述. 材用何木, 舷用幾版, 長廣高卑之度, 低仰軒輕之勢, 帆檣蓬綵之式, 櫂檣桅柁之狀, 油灰艙縫之法, 翼板排濤之術, 種種妙理, 宜詳問而詳錄之, 以謀倣效.

지방관이 자신의 관할 지역에 표류선이 표착해 왔을 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 5가지를 적시한 내용이다. 표류민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내용과, 문정 시 발생하는 여러 폐단에 관한 내용, 그리고 배의 제도를 관찰하여 좋은 점을 배울 것을 주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 다섯 가지 지침을 보면, 당시 조선 서남 해안에 중국배의 표류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처리 과정에서 과생되는 문제가 만만치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관리들의 미숙한 일처리 뿐 아니라, 문정을 핑계로 심 백성들에 대한 수탈까지 이루어져, 표류선이 한 차례 지나가면 섬 경계가 결판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 생각다 못한 그들은 아예 표류선의 구조 요청을 외면하거나, 난파선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했다. 다산은 몇 만권 책을 바닷가 백사장에 파묻고, 정작 배워서 적용하면 좋을 외국 배의 제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한 관리들의 고식적인 일 처리 방식에 대해 특히 분개했다.

2) 「해방고」에 나타난 표선처리 절차의 변화 과정

이제 다시 「해방고」중의 「피인표해례」와 「피표압부례」, 「제국인표해례」에 수록된 외국인 표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표선 처리 지침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다.⁹⁾

먼저 「피인표해례」에 실려 있는 9가지 예를 검토한다.

願乃漂人下陸，遂將巨斧，劈之析之，即時焚滅，此又何法也。有志之士，既差是役，宜以此爲心。
○一. 與彼人言語，宜示仁惻之色，其飲食所需，務要鮮潔，至誠厚意，發於顏色，庶彼感悅，歸有好言。

9) 정민, 「표류선, 청하지 않은 손님」, 앞의 책에서 「해방고」에 수록된 표류 사실을 연도별로 작성하여 표로 제시한 바 있으므로, 전체 표는 이글에 미룬다.

「표 1」 「피인표해례」 관련 기사 요약

번호	주요사실	내용	비고
1	1667년 복건 유민이 제주에 표착하자 북경으로 압송하고, 병기(兵器)를 돌려줌.	1667년 복건 열서도(烈嶼島) 주민 진득(陳得) 등 95인이 일본으로 장사 가던 길에 제주 대정현에 표착. 이들 중 일부는 명 유민을 자처하여 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잔류를 원하거나, 해상으로 돌려 보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북경으로 압송하였음.	명 유민 송환과 홍의포(紅衣砲) 2구 처리 문제가 논의됨. 후에 사람은 북경으로, 무기는 봉황성으로 돌려보냄.
2	1684년 표류민을 압송하여 데려간 조선 관리에게 상을 내림.	1669년(현종 10) 등주인(登州人) 3인이 지도(智島)로 표류해 왔을 때 전차첨정(專差僉正) 윤지휘(尹之徽)에게 은으로 상을 내리고 잔치를 베풀어준 것에서 비롯되어, 이때 이후 항례로 삼음.	호송 관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처우.
3	1689년 배가 온전하면 바다로 돌려보내고, 배가 부서졌으면 육지로 돌려보내게 함.	1689년 복건상인 주한원(朱漢源) 등 28인이 베트남에서 조선 표류민을 싣고 제주로 도착하자, 배와 보상금을 은으로 값을 쳐주고 육지로 송환시킴. 이에 청 황제가 해금이 이미 풀렸으므로 향후로는 배가 온전할 경우에는 해로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규례를 삼게 함.	표류선이 아닌 구호선박 또는 피난선박에 대한 처리 규례가 처음 마련됨.
4	1730년 등주부인(登州府人) 유정(劉楨) 등 14명이 표류해 오자 배가 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육로를 통해 봉황성으로 압송함.	표류민이 분명하고, 그대로 돌려보내 줄 것을 원했음에도 표민 호송조약이 엄격하여 이를 어기지 못해 육로로 봉황성까지 호송함.	다산은 1689년의 규례를 환기하며, 그 사이에 별도의 새 조약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궁금해 함.
5	1706년 표류민이 간 뒤에 건져낸 화물을 돌려보낼 것을 의논하자 그대로 두게 함.	1704년 전라도 남도포(南桃浦)로 표류한 복건성 장주인(漳州人) 왕부(王富) 등 114인이 일본에 장사차 떠났다가 배가 침몰함. 배에 실린 화물을 건져내어 그들의 요청에 따라 국중에서 발매하고, 값을 쳐서 은으로 지급함. 화물 중 우각(牛角)과 오연(烏鉛) 등 금지 품목은 그대로 돌려보냄. 이후 김준(金俊)이란 자가 몰래 침몰한 배에서 상아 6통과 흑각(黑角) 84통, 소목(蘇木) 3만근 등을 건져낸 것을 조선 정부가 적발하여, 이를 돌려주는 문제로 공문이 오감.	흑각과 상아 등 금지품목만 돌려보내고, 나머지 소목 등은 쓸모가 없으니 알아서 처리하도록 공문을 보냄.

6	1740년 청 조정에서 표류선을 수리하여 돌려 보낸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보내음.	1739년 복건 흥화부(興化府) 보전인(莆田人) 진협순(陳協順) 등 22명이 추자도로 표류해 오자, 조선 정부에서 의복과 식량을 지급하고, 배의 부서진 부분을 수리하여 돌려 보내자, 보고를 받은 복건 순무 왕사임(王士任)이 보고를 올리고, 이에 예부에서 크게 감사의 뜻을 표해 공문을 보내음.	위 4의 경우처럼 육로로 보내지 않고 해로로 보내 데 대해 치하한 내용으로 보임.
7	1809년 표류선을 장식한 철물을 보내오게 함.	강남 소주부(蘇州府) 원화현인(元和縣人) 공봉래(龔鳳來) 등 16인의 배가 제주에서 압초에 부딪쳐 좌초하자, 육로로 돌려 보냈는데, 운반하기 어려운 물건과 배를 장식한 철물을 값을 쳐서 번상해 주고, 배는 그들의 뜻에 따라 태워버림. 이후 중국 예부에서 장선철물(粧船鐵物)이 혹 불법을 저지른 물건인지의 여부를 두고 자문이 여러 차례 오고감.	다산은 안설에서 배를 장식한 철물을 배에 실어둔 첫덩이로 혼동하는 바람에 빚어진 오해를 밝히고, 이로 인해 큰 폐단의 선례가 되었음을 지적함.
8	1810년 표류선의 철물 등을 조선에서 수송함.	산동 등주부민(登州府民) 손문서(孫文緒) 등의 표류선에서 나온 닻과 같은 철물을 수송하고, 대금 처리 문제로 자문이 오감.	위 7의 선례가 폐단으로 이어짐을 설명한 내용임.
9	1820년 표류민이 돌아간 후 철물을 보내자 성경(盛京)에서 관련 내용을 묻는 공문이 오고 이에 조선에서 답함.	강남 통주인(通州人) 팽금상(彭錦祥) 등이 제주로 표착하여, 함께 표류한 갈원유(葛源裕)의 배에 동승하여 돌아가고, 남긴 물건은 태우고, 철물은 따로 실어 보낸 사정을 보고함.	위 7의 선례가 계속 폐단이 되었음.

위 [표1]이 보여주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에는 표류민을 북경으로 압송하였다. 이때 비록 본인이 해상으로 보내 줄 것을 원하거나, 심지어 송환을 거부하고 잔류를 희망할 경우에도 강제로 돌려보냈다. 대포 등의 무기도 현물로 돌려보냈다. 둘째, 표류민을 호송한 조선 관원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은으로 상을 내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등 격식을 갖춰 예우하였다. 셋째, 표류선이 아닌 구호 선박이나 피난 선박의 경우, 배가 온전하면 해로로 돌려보내게 하였다. 넷째, 표류선의 물품 중 국내에서 판

매가 가능한 것은 값을 쳐서 은으로 지급하였고, 금지 품목은 현물로 돌려 보냈다. 다섯째, 1809년 표류선의 장식 철물을 값으로 쳐주자, 이를 중국 정부에서 불법으로 선적한 화물로 오해하여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두고 두고 폐단을 불러오게 되었다.

「해방고」의 「피인표해례」는 중국인이 조선에 표착했을 때, 이들을 본국으로 압송하는 규례가 어떻게 변모하고, 표류선에 신고 있던 화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정식을 1667년에서 18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발생한 9차례의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표2] 「피표압부례」 관련 기사 요약

번호	주요사실	내용	비고
1	원래의 구례(舊例)는 표류민을 모두 북경으로 압송하였음.	1652년 소주인(蘇州人) 묘진실(苗進實) 등 213명이 일본으로 장사하러 갔다가 병변(兵變) 소식을 듣고, 교지국(交趾國)으로 가서 7년간 머물다가 회국하던 중 제주로 표류하여 28명만 살아 남았으므로 이들을 북경으로 압송함. 1706년 산둥성인(山東省人) 진오(陳五) 등 13명이 제주로 표류했을 때도 북경으로 보내, 병부(兵部)에서 원적지로 돌려보냄.	표류민의 북경 압송과 병부 관할로 원적지 회송이 구례였음.
2	강희 만년에는 표류민을 봉성까지만 압부함. 예가 조금 바뀜.	1713년 계사(啓辭)에 1687년 제주로 표류해 온 사람을 봉성까지만 데려다 주고, 역관이 자문을 가지고 북경에 들어가게 한 전례를 들어, 제주에 표류한 복건 사람을 봉성까지만 송부하는 일을 아뢰자, 그대로 시행케 함.	위 1의 구례가 이때 조금 변경되었음.
3	이후 표류민을 모두 봉성으로 압부하게 됨.	1715년 등주인(登州人) 노정언(魯正彦) 등 11인이 황해도 장연(長淵)으로 표류해오자, 이들을 봉성까지 데려다 줌. 1728년에도 강남 진강부(鎭江府) 단도현민(丹徒縣民) 고삼(高三) 등 10인이 백령도에 표류해오자 봉성으로 교부함.	이때 와서 구례가 완전히 바뀌어 봉성까지 송환하는 것으로 정착됨.
4	봉성으로 압송한 사람은 모두 북경으로 보내지는데, 재지관(貴胄)	1733년 강남 송강부인(松江府人) 왕경사(王敬思) 등 16명이 제주로 표류하여 봉성으로 보냈다. 재지관 한수희(韓壽禧) 등이 봉성에 교부한 표류민이 북경에 도착하지	봉성 송환 후 자문은 북경까지 가서, 표류민이 북경에 당도

	<p>官)이 북경이 먼지 가서 표류민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옹정(雍正) 이후로는 자문을 교부하면 표류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돌아오게 함.</p>	<p>않았으나, 장마를 걱정하여 먼저 귀국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이에 전례를 살펴 귀국을 허락함.</p>	<p>하면 그때서야 재자관이 귀국할 수 있었는데, 이 때부터 지문만 교부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규례가 변경됨.</p>
5	<p>1756년 산동의 표류민을 봉성에 교부하고, 북경을 가지지 않고 성경에서 곧장 표류민을 원적지로 돌려보냄.</p>	<p>1756년 산동 내주부민(萊州府民) 왕복득(王福得)과 오정주(吳廷柱)가 표류해왔는데, 봉성까지 압송한 후 성경 예부(禮部)에 이자(移咨)함.</p>	<p>이때는 표류민을 북경까지 보내지 않고 성경에서 바로 원적지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변경됨.</p>
6	<p>그후 복건 사람이 표류해오자, 봉성으로 압송하고, 북경까지 데려감.</p>	<p>1756년 복건성인 장군택(莊君澤) 등 24명이 표류해오자, 봉황성으로 교부하고, 북경으로 전송(轉送)하였는데, 도착하지 않자 먼저 귀국할 것을 간청하므로 재자관을 먼저 돌려 보냄.</p>	<p>다시 4의 경우와 같아짐.</p>
7	<p>1774년 강남인이 표류해오자 봉성까지 압부하고 성경에서 바로 원적지로 돌려보냄.</p>	<p>1774년 강남 단양현민(丹陽縣民) 왕상순(王相順) 등 9인이 표류해오자 이들을 봉황성으로 교부하였다. 성경장군(盛京將軍)이 예부(禮部)와 회동하여 봉천부에서 바로 원적지로 돌려보냄.</p>	<p>5와 비슷한 처리 방식 성경에서 봉천부(奉天府)로 보내 원적지로 회송함.</p>
8	<p>그후 산동 복건 등지의 표류민은 봉성으로 압부하여 성경에서 곧장 원적지로 돌려보냄.</p>	<p>1777년 내지민 왕옥산(王玉山) 등 남녀 68명과, 1778년 직례성(直隸省) 등 여러 지역 상인 조영례(趙永禮) 등 75인의 표류에 성경으로 압송한 후, 성경에서 바로 원적지로 돌려보내게 함.</p>	<p>이때부터 산동과 강남 등의 표류민도 성경에서 곧장 원적지로 돌려보내는 것을 규례로 삼음.</p>
9	<p>1798년 산동 표류민이 황제의 하서품을 지녔으므로 예우하여 북경까지 압송하려 하였으나, 성경에서 전례에 따라 머물게 함.</p>	<p>1798년 산동 영성현인(榮城縣人) 석진공(石進功) 등이 해주 연평도로 표류했다가 육로로 돌아올 때, 그 중 양재명(楊才明)이란 자가 천수연(千叟宴)에 참석하여 받은 사물(賜物)이 있으므로 우대하여 북경까지 보내주려 하였으나, 요양에서 병사하자, 표류민을 머물게 하고 차원(差員)만 가게 하였다.</p>	<p>예외적 경우에 처리하는 방식의 예시로 든 것임. 역시 전례에 따라 처리하였다.</p>

[표2] 「피표압부례」 역시 모두 9 단락의 본문과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표류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절차 규례의 변화 과정을 대표적 사건을 통해 예시하였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례(舊例)는 표류민을 북경까지 압송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둘째, 강희(康熙) 만년 이후로는 표류민을 봉성까지만 압부하는 것으로 규례가 바뀌었다. 셋째, 1733년 이후로는 표류민이 북경에 당도하기 전에도 재자관(貴查官)은 자문만 교부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규례가 변경되었다. 넷째, 1756년부터는 표류민을 북경까지 보내지 않고, 성경에서 바로 원적지로 돌려보내게 했다. 하지만 이후 경우에 따라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 다섯째, 1777년 이후로는 강남의 표류민도 성경에서 바로 원적지로 돌려보냈다.

「표3」 「제국인표해례」 관련 기사 요약

번호	주요사실	내용	비고
1	1794년 유구국 사람이 제주도 로 표류하여, 북경으로 보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함.	1794년 제주 대정현(大靜縣) 가 파도(加波島) 앞에 유구국 팔중산도(八重山島) 신천촌인(新川村人) 미정겸개단(米精兼介段) 등 11인이 표류하여, 7인은 죽고 4인을 중국으로 전송(轉送)하였는데, 도중 1인이 죽어, 나머지 3인을 절사(節使) 편에 본국으로 회송함. 1612년에도 유구인 마희부(馬喜富) 등이 제주로 표류해 온 것을 중국으로 보낸 예가 있음.	안설에서 다산은 유구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하고, 1698, 1716, 1727, 1740, 1780, 1794, 1796, 1797, 1804, 1814, 1820년에 유구에 표류한 조선 어린이 북경을 거쳐 송환된 예를 들고, 1820년에 제주에 표류한 유구민이 육로로 북경으로 회송된 일을 적음.
2	1801년 남번(南番)의 이색인(異色人)이 제주로 표류하여, 북경으로 보냈으나, 북경에서 조선으로 다시 돌려보냄.	1801년 제주 대정현에 이양선 1척이 정박해 흑인 5인을 딸고 달아났는데, 국적을 몰라 육로로 중국으로 보냈으나, 중국에서도 그들의 국적을 몰라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냄.	다산은 안설에서 문순득에게서 들은 전문을 길게 소개하고, 이들이 마카오에 머물던 필리핀인 노예임을 밝혔다. 이들은 결국 제주에서 죽었다.

[표3]의 「제국인표해례」는 중국인이 아닌 제 3국 표류민을 중국을 통해

본국으로 송환하려 한 예를 들었다. 유구국과 남번 이색인의 두 예를 들었는데, 유구국의 경우는 일정한 규례에 따라 북경을 거쳐 본국으로 회송하였고, 조선인이 유구로 표류해 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본국에 송환되었다. 한편 언어가 통하지 않은 남번 이색인 5인의 경우는 북경으로 보냈으나, 북경에서도 이들을 처리할 수 없어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냈다. 서로에게 처리를 미룬 것인데, 이 경우는 몹시 흥미로워 뒷 절에서 좀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편 다산은 앞쪽의 「아인표해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으로 표류한 예를 역시 9건에 걸쳐 예시하였다. 조선 표류민이 표착해 오면 해당 지역 관리가 의복과 양식을 지급하고, 이들을 북경으로 압송하여 조사한 후, 조선의 국경까지 통사가 송부하거나, 조선 사신 편에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규례로 삼았음을 적고 있다.

이렇듯 다산의 「해방고」는 단순히 표류의 사례를 연대순으로 나열한 『통문관지』나 처리 공문을 실어둔 『동문회고』와는 달리, 모두 20가지 예시를 통해 중국 표류민의 송환 절차와 물품 회송, 압송에 따른 세부적 지침의 변화 과정을 매뉴얼화 하여 제시하였다. 이것을 보면, 중국 표류민 처리 방식이 어떤 단계를 거쳐 바뀌어 갔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4. 실제 몇 사건을 통해본 표선 처리

실제 조선과 중국 사이에서 발생한 표류 사건은 「해방고」에서 든 예시 외에도 수없이 많이 발생했다. 「해방고」는 처리 절차 상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만 주목하여 정리한 것일 뿐이다.

김경옥은 18-19세기 서남해 도서지역에 표착한 표류민의 추이를 『비변사등록』, 「문정별단(問情別單)」의 분석을 통해 정리한 바 있다.¹⁰⁾ 각종 관

변 기록에서 추출한 표류민 관련 기사만 해도 67건이나 된다. 여기에 조선인의 해외 표류까지 포함하면 관련 자료는 실로 어마어마한 분량이 된다. 표류는 예기치 않은 사고지만, 이를 통해 외국 문화와 접촉할 수 있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

하지만 다산의 「표선문정」5조에서 보듯, 당시 조선의 중국 표선 처리 과정과 절차는 매우 서툴렀고, 국제적 감각을 결여한 폐쇄적인 것이었다. 앞서도 보았듯 몇 만 권의 서책을 바닷가 백사장에 파묻기도 했고, 구조를 요청하는 표류민을 위협하여 상륙하지 못하게까지 했다. 심지어는 표류선과 배의 선적물을 불태워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실제 이런 과정에서 정부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표류선의 존재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표류민 구호 절차가 단지 인도적 견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해당 섬 주민들에게는 표류민 구호가 자칫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음을 말해준다. 관리의 수탈과 탐학에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다. 이제 본 절에서는 다산이 「해방고」에서 제시한 몇 사건을 간략하게나마 좀더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는 1667년(현종 8), 복건성 열서도인(烈嶼島人) 진득(陳得) 등 95인이 장사차 일본으로 가다가 제주 대정현에 표착한 사건이다.¹¹⁾ 이들은 1644년 명나라 멸망 이후, 청나라 군사가 열서도에까지 진주하지 않아 삭발하지 않고 십여년 간 바다에서 무역을 하며 지내던 터였다. 이들은 명나라의 유민을 자처하면서, 청나라가 지배하는 중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는 바람에 조선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 역시 그들의 명에 대한 의리를 사모하여, 이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측과, 돌려보내지 않으면 외교 문제가 발생하니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는 측으로 갈려 논쟁을 벌였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던 조선

10) 김경옥, 앞의 논문.

11) 「해방고」(『다산학단 문헌집성』 제9책 37-38면)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

정부는 결국 이들을 북경으로 압송하여 돌려 보냈다. 진득 등은 자신들을 바다로 돌려보낼 수 없다면 차라리 조선에 남아 조선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까지 간청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 의리론과 현실론의 극명한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국론 분열의 양상으로까지 치달았다.

성해응(成海應)의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에는 「정미전신록(丁未傳信錄)」이란 글이 실려 있는데, 1667년에 발생한 진득 등 표류민들과 날짜 별로 개별적으로 문답한 「표인문답(漂人間答)」이 방대한 분량으로 남아 있다.¹²⁾ 또 이들이 홍제원에 머물며 조선 정부에 보낸 탄원서인 「표인재홍제원투서(漂人在弘濟院投書)」와 이들이 지은 시, 그리고 이들을 송환하며 조선 정부가 중국에 보낸 자문 등 각종 기록들이 갖추어져 있다. 이 기록은 대명의리와 현실 논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조선 지식인의 생각도 드러나 있고, 명청의 교체 시기에 조선 정부의 대응 방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의 검토 기회를 갖기로 한다. 또 1689년에 발생한 복건성 상인 주한원(朱漢源) 등 28인이 베트남에 표류했던 제주도민 고상영(高尚英) 등 24인을 태우고 제주도로 도착한 사건도 흥미롭다. 명청 교체기에 강력한 해금 정책으로 인해 양국간의 선박 왕래가 중단되었던 형편이었으므로, 당시 조선 정부는 이들에게 선박의 비용과 표류민 구호에 따른 비용을 은으로 지급하면서 이들을 굳이 육로로 북경으로 돌려 보냈다. 보고를 받은 중국 황제는 이후 배가 온전할 경우 육로가 아닌 수로로 직접 돌려 보내는 것을 규례로 삼을 것을 지시하여, 이후 정식으로 삼는 계기가 되었다.

주한원 등이 베트남에서 조선 표류민을 만나 이들을 배에 태우고 돌아오는 과정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다. 놀랍게도 당시 이들의 표류 사실은 세 편의 서로 다른 표류기가 전해지고 있어, 세 편의 기록을 종합하면 당시의 세부 사정을 생생하게 복원할 수 있다. 또한 주한원 등이 조선에 와서 관리와

12) 성해응, 『연경재전집』외집(문집총간 277책 7면)에 수록되어 있다.

문정한 기록도 남아 있다.¹³⁾ 몇 해 뒤에는 그의 조카리는 자가 은혜를 갚는다는 구실을 대고 무역을 목적으로 다시 제주로 와서 조선 국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때를 쓰다가 그저 돌아간 일도 있어 여러 가지 흥미로운 뒷 얘기를 남겼다.

가장 흥미로운 사건은 1801년 남변의 이색인 5인이 제주로 표착한 기록이다. 제주 대정현 앞바다에 이양선이 나타나 급수선(汲水船)을 내리고 흑인 들을 포함한 5인을 내려 놓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양선은 위협을 느껴 급수선을 버려둔 채 달아나 버렸다. 이들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서 국적조차 알 수가 없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북경으로 보냈다. 막상 중국에서도 이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 처리할 길이 없다 하여 차라리 이들이 도착한 제주에서 돌아갈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낫겠다고 하며 조선으로 다시 보내고 말았다.

다산은 『문견록(聞見錄)』과 이들과 접촉한 흑산도 어부 문순득(文順得)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이들이 마카오에서 출발한 당시 포르투갈 지배 아래 있던 필리핀 노예들임을 확인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정동유(鄭東愈)의 『주영편(晝永編)』에도 이들과 직접 만나 탐문한 내용이 자세하다. 분안시고, 열리난 두, 안드러수, 마리안두, 끼이단우 등 이들의 이름뿐 아니라 103가지 단어를 우리말로 옮겨 적고 있다. 어휘를 보면 자신이 살던 곳을 ‘막가오’라 했다. 그들의 언어는 포르투갈어였다.

「해방고」에서 다산은 문순득이 유구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표류해갔을 때 보니, 그들의 복장이 제주도 이색인의 복장과 똑 같더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당시 이양선에 탔던 사람과 만났는데 그가 조선을 약방(藥房)이라 부르면서, 자신들을 해치려 해서 달아난 것이라고 설명한 일을 적고 있다. ‘약방’은 대개 일본을 당시 ‘야뽕’ 또는 ‘야뽕’ 등으로 불렀음

13) 고상영의 안남국표류기는 정운유의 『탐라문견록』에 수록되어 있고, 이 외에 당시 제주목사 이익태(李益泰)의 『지영록(知瀛錄)』에 「김대황표해일록(金大璜漂海日錄)」이, 그리고 정동유(鄭東愈)의 『주영편(晝永編)』에 역관 이제담(李濟聃)이 고상영과 만나 안남국 표류 시말을 적은 내용이 각각 실려 있다. 특히 『지영록』에는 주한원 등과의 관련 문답이 상세하게 실려 있고, 처리 과정에 얽힌 뒷 얘기도 실려 있다. 정민, 『탐라문견록』 앞의 책 28면 참조.

을 상기할 때, 당시 여송국 이양선이 제주를 일본의 어느 섬으로 알고 있었던 사정을 짐작케 한다.¹⁴⁾ 이 사건 또한 문순득의 「표해시말(漂海始末)」을 비롯한 여러 관련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더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5. 맺음말

이상 다산의 『사대고례』중 「해방고」를 통해 18, 19세기에 조선 서남 해안에 표착한 중국 표류선의 처리 절차와 처리 방식의 변화 과정을 거칠게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도, 양국 간에는 일정한 규례와 절차에 따른 표선 처리 매뉴얼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산의 이러한 작업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정리에 주된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다산의 대외인식이나 개혁 사상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표류선을 통한 타문화의 접촉은 우리 문화 속에도 여러 흔적을 남겼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부러 이들을 찾아가 만나 문답한 내용을 자신들의 개인 문집에 기록으로 남겼다. 혹은 표류선에서 흘러나온 물품들이 조선에서 유통되면서 흥미로운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다. 황차(黃茶)를 실은 배가 표류하여, 온 조선이 10여년 간 그 배에서 흘러나온 차를 마셔, 조선 후기 차문화 발전에 한 기폭제가 되었던 것은 흥미로운 예 가운데 하나다.¹⁵⁾ 표류 관련 기록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이제 시작 단계에 와 있다. 향후 개별적 기록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비변사등록』의 「문정별단」에 대한 분석은 표류민 처리 과정의 세밀한 부분을 더 자세히 알려 줄 것이다. 명대와 청대의 표류민 관련 정책의 차이점도 탐구해야 할 과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를 통해 다산의 대외인식이나 개혁 사상과의 연관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14) 관련 내용은 「해방고」 앞의 책 72쪽에 자세하다.

15) 정민, 「표류선, 정하지 않은 손님」(앞의 책), 58쪽을 참조할 것.

투고일	09.04.10	심사완료일	09.05.11	게재확정일	09.05.14
-----	----------	-------	----------	-------	----------

〈참고문헌〉

정운경 저, 정민 역, 『탐라문건록』, 휴머니스트, 2008.

정민, 「표류선, 청하지 않은 손님-외국 선박의 조선 표류 관련기록 探討」, 한국한문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정민, 「從三份十八世紀朝鮮人漂流臺灣的歷史文獻講起」, 臺灣敘事學會, 2008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김경옥, 「18-19세기 서남해 도서지역 漂到民들의 推移」, 『朝鮮時代史學報』 제 44집, 조선시대사학회, 2008. 3, 5-36면

임형택, 「사대고려와 정약용의 對淸關係 인식」, 『다산학』제 12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8.6, 25-47면

〈Abstract〉

The Treatments of China Drift ships
in *Dasan's HaeBanggo*

Jung, Min (Hanyang Univeristy)

Haebanggo(海防考) of *Sadaegora*(事大考例) is a book written by *Dasan Jung Yakyong* which deals with processes and methods on treatments of China drifting ships on southwest beaches of *Josun* in case by case. At that time, castaways of China drifting ships which often appeared on island zones in southwest beaches brought about many social problems. Most of these castaways had to return to China according to certain processes that was changeable by times.

Before China government removed an embargo, castaways were sent to *Beijing* under escort, but after the removal of the embargo, if a drifting ship was remained intact, it was returned to China by sea. *Josun* government indemnified them for the goods or hardwares of a drifting ship in money. As time goes by, castaways were sent to only *Bongsung*. Likewise the treatments of castaways and drift ships became enfeebled. Because these situations of drifting frequently happened. Besides *Yugu*(琉球) and other foreigners, except Japanese, were sent to *Beijing* by land without special exception.

In this way, rules and processes on the treatments of castaways were working between *Josun* and China at that time. Although

drifting was an accident, it become a field of cultural exchange unintentionally. Documents related with drifting include several clues which were made by contacts of other cultures. Studies on drifting is still at an early stage. From now on, through examinations about each document, more details will be inquired.

Key Words: Jung Yakyong, Sadaegorae(事大考例), Haebanggo(海防考),
castaways, drifting ships, Pyusunmunjung(漂船問情),
Tongmungaunji(通文館志), Dongmunheigo(同文彙考)